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5. 23.

다. 상정일자: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6.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가. 제안이유

- 마포구 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포구 구민상 수상 대상 및 시상 부분 변경(안 제9조)
 - 구민상 수상 대상 거주 요건 명확화(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용감한 구민, 장한아버이 → 안전·환경, 교육 / 봉사 → 봉사·기부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16조)

-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표창 대상에서 제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마포구 표창조례
- 입법예고: 2025. 4. 17. ~ 5. 7.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구민상 시상 부문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① 주요 개정내용

○ 수여 자격의 명확화

- 제9조 제1항: “거주”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로 개정하여 표창 대상의 자격요건 명확화

○ 표창 분야의 정비

- 제9조 제2항: 기존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 “봉사” → “안전·환경”, “교육”, “봉사·기부” 등으로 용어를 현대화하고 범위를 확대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9조	[시상부문] 문화, 체육,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 효행·선행, 봉사, 지역발전	[시상부문] 문화, 체육, <u>안전·환경</u> , <u>교육</u> , 효행·선행, <u>봉사·기부</u> , 지역발전

○ 표창 수여 제한 및 취소 근거 신설

- 제16조 제목을 “표창의 제한 및 취소”로 변경
- 제1항: 중대한 비위행위자, 동일 공적 수상자, 기타 표창 계획에 의거 제한 대상자에 대해 표창 수여 제한 규정 명시
- 제2항: 공적의 허위, 부적격 수상 등에 대한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근거 마련. 단, 상장 및 감사장은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표창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